

전문연구요원 복무 준수사항 [2021]

○ 전문연구요원 제도

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병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(연구기관)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병역 대체복무 제도입니다.

○ 의무 복무기간: 36개월

○ 장소 제한: 당초 편입한 연구소(원)에서만 근무하여야만 함

○ 전직·파견·출장·국외여행 등으로 병역지정업체를 벗어나는 경우 승인·신상 변동 통보 등 행정 절차 거쳐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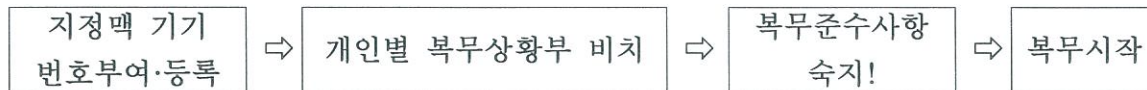
○ 업무 제한: 편입 당시 연구분야(대학원 전공분야)에 복무해야 함.

※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조교 겸직 가능

○ 편입 당시 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: 병역법 위반(지정업체 고발, 의무자 4개월 연장 복무)

○ 신상 변동통보: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

○ 복무 절차 및 준수사항(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장소 및 업무 제한)



1. 출 · 퇴근 인증 및 복무상황부

가) 근로시간 : 09:00~18:00(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 적용)

- 매일 출근, 퇴근 인증해야 합니다(주말, 공휴일은 제외)

(인증 시간: 출근 09:00 이전 / 퇴근: 18:00~20:00까지)

- 의무 복무기간 통틀어 8일의 무단결근은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)

- 본인 실수로 인증을 누락하는 경우 연가(휴가)에서 1일 차감함

나) 병역법 개정(제41조)으로 8일 미만 무단결근은 5배수 복무 연장처리 (시행일, 21.4.13.부)

※ 무단 지각, 조퇴, 외출은 추후 훈령개정을 통하여 5배수 연장 예정임

다) 개인별 복무상황부

- 사전승인이 원칙이며 다음 사항을 복무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함

- 지각, 조퇴, 외출, 연가, 병가, 출장 등과 같은 복무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건별로 기재함

- 공무로 인한 외출, 출장: 출장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
- 사전 승인받지 않은 지각, 조퇴, 외출, 결근은 무단결근 및 연장 복무로 처리함

다만,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함

- 부득이한 사유: 교통사고, 재난 등의 경우 사후허가 가능함

2. 휴가 · 병가

가) 휴가: 1년 단위로 발생/미사용 연가는 소멸됨

- 1년: 12일(1개월 만근 시 1일 사용 가능)/2년, 3년: 15일

- 연가(휴가) 종류: 오전(9:00~2:00)/오후(2:00~18:00)

- 휴가 일수 초과 기간은 초과 기간만큼 연장 복무함

- 휴가원 신청: 사전에 휴가원 제출해야 함

나) 경조 휴가: 연가일수와 무관하며, 사유가 발생한 날 포함하여 연속(주말, 공휴일 포함)하여 실시함

- 본인 결혼: 7일
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및 조부모상 5일

-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3일

- 배우자 출산 10일(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)

※ 관련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

다) 병가

-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, 초과 기간은 연장 복무함
-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상,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
-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
- 7일 미만 병가는 지도교수 확인서 및 관련 증빙(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) 제출

3. 출장·파견

가) 국내 교육훈련: 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

나) 국내 파견(출장 포함): 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

다) 파견(출장)범위:

- 승인신청: 3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, 파견(출장) ※ 지방병무청 승인 후 파견 가능
- 신상변동 통보: 8일 이상~3개월 미만 교육훈련, 지정업체 간 파견(출장)
- 복무기록표 기재사항: 7일 이내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

4. 국외여행(출장)

가)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 제출(지정업체의 장 추천)

-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, 국외 출장 등
- 휴가 기간 내 개인 여행 등

나)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

- 허가 기간: 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이며,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복무기간에 포함함
(15.7.1.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/15.6.30 이전 편입자는 종전 규정 적용함)
- 당초 여행 기간보다 일찍 귀국할 경우 정상 출근하여 인증함

다) 복무기간 인정

- 해당 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, 기술연수,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
- 관련 업무와 일치 여부
- 경비부담:공동연구의 경우 공동부담(개인 부담은 복무기간 불인정)
- 연구성과: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소유(개인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)
- 계약당사자: 업체의 장과 국외 연구기관의 장(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기간 불인정)

5. 의무 복무기간 중 수학

가) 의무 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 불가함

나) 의무 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

- 야간, 주말 또는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 가능
- 국내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 35세까지 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3년 6월 범위내에서 업체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 통보 후 수학 가능함
- 수학 신상변동 통보 기간: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
- 신상 이동통보 절차: 의무자→ 업체의 장→ 관할 지방병무청장

다) 수학 금지 예외

-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(의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)

6. 전직 및 전직 제한

가) 당연 전직

-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함
- 복무 중인 업체가 폐업하거나 업체선정이 취소된 경우
- 복무 중인 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

나) 승인 전직

- 하나의 병역지정업체에서 1년 6월 이상 복무한 경우
(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직할 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함)
- 연구 분야의 폐쇄, 이전, 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
-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(예, 대기업→ 중소기업, 국공립 등→ 중소기업)
- 전직 승인 절차: 지정업체의 장에게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다) 전직 제한

- 승인 전직 대상자로 잔여 의무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사람
(다만,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는 제외)
- 그 해, 편입 및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인원 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
- 그 해, 고발·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인원 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
- 병역지정업체장이 4촌 이내 혈족인 해당 업체로의 전직
-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의 전직
-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이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
-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동일 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로서 연구 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

7.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대상

- 가)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(법 38조의 2)
- 나)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,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(법 94조)
- 다) 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 분야와 다른 연구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는 편입 제한(훈령 제30조)
- 라)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(훈령 31조)

지정업체의 장: 연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원장 현 승

